

부속서 13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협력

1. 양 당사자는 제13장의 목적 달성을 증진하고 그에 따른 자신의 의무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의 협력 분야에 관한 예시적 목록을 수립하였다.

가. 양 당사자가 수행하는 지속가능성 영향 평가를 고려하여, 이 협정이 지속가능한 발전에 미치는 긍정적 및 부정적 영향과 이를 강화, 방지 또는 완화할 방법에 대한 견해의 교환

나. 특히, 세계무역기구, 국제노동기구, 국제연합환경계획 및 다자간 환경협정을 포함한,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사회적 또는 환경적 측면을 담당하고 있는 국제 포럼에서의 협력

다. 국제노동기구의 핵심 및 그 밖의 협약과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다자간 환경협정의 비준을 증진하기 위한 협력

라. 국제적으로 합의된 지침의 효과적 이행과 후속조치, 공정하고 윤리적인 무역, 에코 라벨부착을 포함한 민간과 공공의 인증 및 라벨부착제도, 녹색공공조달을 포함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정보 교환과 협력

마. 환경 규정, 규범 및 기준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견해의 교환

바. 세계 탄소시장과 관련된 문제, 무역이 기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다루는 방안, 그리고 저탄소 기술 및 에너지 효율을 증진하는 수단을 포함하여, 현재와 미래의 국제기후변화체제의 무역 관련 측면에 관한 협력

사. 바이오연료와 관련된 것을 포함하여 생물다양성의 무역 관련 측면에 관한 협력

아. 지속가능한 어업 관행을 증진하는 무역 관련 조치에 관한 협력

자. 불법 벌목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것을 포함하여 산림벌채를 해결하기 위한 무역 관련 조치에 관한 협력

차. 세관 협력을 포함하여 다자간 환경협정의 무역 관련 측면에 관한 협력

- 카. 무역과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노동시장 조정, 핵심 노동기준, 노동통계, 인적자원개발과 평생학습, 사회적 보호와 사회적 포용, 사회적 대화와 남녀평등 간의 상호 연계에 관한 것을 포함하여 국제노동기구 양질의 일자리 의제의 무역 관련 측면에 관한 협력
- 타. 다자간 환경협정과 국제무역규범 간의 관계에 관한 견해의 교환, 또는
- 파. 양 당사자가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그 밖의 형태의 환경 협력

2. 양 당사자는 그들이 개발한 협력 활동의 적용과 혜택이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된다면 바람직할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